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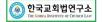


### law church 제19호

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338호) (031) 984-9134

• 교회법 통권 제19호 • 발행인 : 소재열 •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 발행일 : 2022. 12. 5.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업자번호 : 119-82-83446

•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토요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상담 전화가 온다. 주일을 앞두고 교회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했다. 상담할 때는 상대방의 교회 아픔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상담이 되지 않는다. 매 주일 3편의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적어도 토요일은 종일 설교 준비를 해도 부족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상담 전화를 받아야 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회 상담을 요청했을까 하는 마음에서 성실히 응해 준다. 적어도 이런 전화는 하루에 10통화이상의 상담 전화가 오는 날이 허다하다.

매일같이 '법'을 말해야 하고, 교회법, 국가법을 넘나들면서 생각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성령의능력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친다. 그리고그말씀 속에서 영적 충만함을 맛본다. 교회법은 교회를 위한 봉사의 기능이어야 한다. 교회법이 사단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소재열〉







### 존 칼빈(John Calvin)의 출교에 대한 고찰 김순정 목사 (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 목 차

- I. 서론
- II. 칼빈의 출교에 대한 이해
- 1. 교회의 권징
- 2. 교회의 재판권의 영적 성격
- 3. 교회의 권징: 출교

- (1) 권징의 필요성과 성격
- (2) 교회 권징의 단계
- (3) 권징의 목적
- 4. 출교: 교정수단
- III. 결론

#### □ 요약 □

종교개혁자이자 개혁신학의 선구자인 존 칼빈(J. Calvin)은 그의 목회의 현장에서 권장을 신실하게 시행하였다. 그가 교회를 통해 행한 권장은 교인들의 신앙의 정결과 교회의 질서 유지, 성결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권장에 대한 사상과 출교에 대한 견해는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와 「성경주석」(Calvin's Commentaries)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 교회는 권장 시행하기를 꺼리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모습은 모두 성경이 제시하는 권장을 바르게 시행하는 않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권장에 대한 바른 모습은 교회의 순수성, 성도의 순결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오늘날 교회는 칼빈의 이 권장에 대한 가르침, 출교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시행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권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죄인들에 대해서도 권장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

※ 김순정 목사 / 한국성서대학교 졸업(신학, B.A.),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수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목회학, M.Div.),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조직신학, Th.M.), 말씀사역원 본부장, 새사랑교회 시무. 저서로 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 읽기 등이 있다.

#### I. 서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보면 권징조례 부분이 있다. 권징조례 1조는 권징의 의의로 "권 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 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 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고 명시한 다.1)

권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권장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 주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이 진리를 반드시 전제할 때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권장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교회의 권장에 대해 반발하고 거부하며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것은 바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권장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의 권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세상법정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권장을 집행하는 자들 역시 권장의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불법이나 편파적 권장을 행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의 분쟁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몰이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권징조례 2조는 권징의 목적을 밝힌다. "진리

1) http://gapck.org/sub\_06/sub07\_01.asp

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고 명시한다.2)

권징의 목적을 자세히 보면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진리를 보호하며 (2) 그리스도의 권병 (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3) 악행을 제거 하고 (4)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5) 덕을 세우고 (6)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권병(權柄)의 저울추 권(權)과 자루 병(柄)이라는 글자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힘 혹은 그런 신분'이라고 했다. 그 권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마 16:19).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출교를 단지 교 인 지위의 박탈로 보는 제명(출교)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출석하던 교 회에서 제명(출교)를 당하면 회개함이 없이 기분 이 상했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 과연 출교라 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최종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최종판)를 중심으로 그가 제시한 출교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추적하고, 현대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한다.

<sup>2)</sup> http://gapck.org/sub\_06/sub07\_01.asp

#### II. 칼빈의 출교에 대한 이해

#### 1. 교회의 권징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들의 모임이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까닭에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마18:20).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지키는 것을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할수 있는 표지"라고 했다.3) 교회는 진리의 터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충실한 파수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봉사와 수고에의해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영적 양식과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스스로 한 가족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셨다.4)

그러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교회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5) 모든 인간 사 회에는 공공의 평화 촉진과 화합의 유지를 위해 어떤 형태이든 조직이 필요하다.6) 바울 역시 고 전 14: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수정 작업한 교회법은 교회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질서라 부른 개혁주의 전통의 독특한 특징을 광범위하게 나타내고 있다.8)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다. 그리고 이에 견줄만한 것으로 권징을 들고 있다. 권징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강조한다.

#### 2. 교회의 재판권의 영적 성격

교회의 권세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 권세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의 권세이다. 이 두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며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권위에 종속되는 것이다. 루이스 벌코프는 교회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세 직분과 연관지어 제시한다. "교리권또는 가르치는 권세, 재판권 또는 권장권을 포함한 치리권 또는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 사랑으로섬기는 권세가 그것이다."의

칼빈은 교회의 재판권의 목적을 죄악을 막고

서 있게 하라"고 했다. 교회법의 중요한 목적은 첫째, 신자들의 성회에 모든 일이 적절하고 위엄 있게 행해지는 것이다. 둘째, 인간 공동체는 인간애와 절도의 유대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공공의 예절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미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7)

<sup>3)</sup>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IV.1.10. 이후로는 Calvin, Inst.,로 표기함.

<sup>4)</sup> Calvin, Inst., IV.1.10.

<sup>5)</sup> Calvin, Inst., IV.10.27.

<sup>6)</sup> Calvin, Inst., IV.20.2.

<sup>7)</sup> Calvin, Inst., IV.10.28.

<sup>8)</sup> Joel R. Beeke, 「칼빈주의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신호섭 역(서울: 지평서원, 2010), 386.

<sup>9)</sup>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권」, 이상원, 권수 경 공역(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5), 854.

발생한 불상사를 제거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재 판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것은 첫째, 영적 권한은 칼의 권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합법적인회의의 결정에서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했던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준수하였다.

서철원 박사는 교회의 권세를 영적 도덕적 권세라고 강조하였다. "교회에 주신 권세도 영적 도덕적 권세이다. 사람의 인격에 관련되므로 영 적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셨지 물리적인 세력으로 역사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또 인격체들에 관련되므로 교회의 권세의 행사는 도덕적 방식으로 권면과 설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0)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전 5:4-5)

칼빈은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의 재판권이 영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재판은 악인을 사탄에게 내주는 영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출교는 결국 사탄에게내어주는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A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B교회로 가서 계속 범죄하고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A, B, C어느 교회도 가지 못하고 가서도 안되는 것이다.

고전 5:4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라고 한다. 여기에 쓰인 "내어주었으니" $(\pi\alpha\rho\alpha\delta\sigma\tilde{v}\nu\alpha\iota)$ 는 과거부정사이다.11) '온전히 내어 주었으

니'라는 의미이다. 영어성경은 To deliver('전달하기')로 번역하기도 하고(KJV, ASV, NASB, RSV, Webster, WEB, ESV), hand over('이양하여, 넘겨주어')로 번역하기도 했다(NIV, NRSV, NLT, BBE, GWT). 어떤 번역을 취하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이것은 영적 의미이다. 교회의 재판권은 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영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밝힌다. 교회의 징계는 사람을 완전히 멸하는데 그목적이 있지 않다. 그를 징계함으로 죄를 깨닫게하고 회개시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그래서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있다고 했다. 여기 "구원 얻게 하려"(σωθῖ)라고되어 있는 이 단어는 과거수동태 가정법이다.12) '온전히 구원을 받도록'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성경과 칼빈이 주장한대로 교회의 권징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 3. 교회의 권징:출교

#### (1) 권징의 필요성과 성격

칼빈은 "권장을 싫어하고 말만 들어도 뒷걸음 치는 자들이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 의 사회란 것을 알아야 한다. 조그마한 가족 같

<sup>10)</sup> 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서울: 쿰란출판사, 2022), 156.

<sup>11)</sup>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revised and edited by F. William Dank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i\alpha\rho$   $\alpha\delta\rho\tilde{\nu}\nu\alpha\iota$ .

<sup>12)</sup>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sigma\omega\theta\tilde{\eta}$ .

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 서는 규율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했다.<sup>13)</sup>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올바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규율이 없다면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올바른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아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권장은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유지하려는 자기방어라 할 수 있다.14)

또한 칼빈은 권징의 성격을 근육에 비유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각기 제 멋대로 행동하게 버려 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15)

사람의 몸에 근육은 몸의 지체들을 서로 결합되게 하고 각각 그 자리에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이 바로 교회의 권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장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하는 자들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굴레와 같고,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유화로 부드럽게 장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은 것이다.16)

#### (2) 교회 권징의 단계

칼빈은 교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점잖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했을 때 충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목사나 장로들이 깨어 있어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만약에 충고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이나 죄악을 계속함으로 충고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증인들 앞에서 두 번째로 충고하고, 그 후에는 교회 재판소 즉 장로회에 불러 공적 권위로 더욱 엄중히 충고하라고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라고 보았다. 18) 칼빈이 말하는 장로회는 consessus Seniorum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장로들의 모임' 즉 당회라 볼 수 있다. 19)

칼빈은 "그리고 죄인이 이렇게 해도 굴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때에는 교회를 경멸하는 자로 인정해서 신자의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셨다(마 18:15-17)"고했다.20)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sup>13)</sup> Calvin, Inst., IV.12.1.

<sup>14)</sup> 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62.

<sup>15)</sup> Calvin, Inst., IV.12.1.

<sup>16)</sup> Calvin, Inst., IV.12.1.

<sup>17)</sup> Calvin, Inst., IV.12.2. 칼빈은 "그들의 임무는 신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만 아니라 일반적 교훈으로 충분한 성과가 없을 때 각 가정에 다니며 경고와 충고를 하는 것이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또 각 가정에서 가르쳤다고 했으며(행 20:20),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으므로(행 20:31),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깨끗하다고 했다(행 20:26). 목사는 모든 사람이 모인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설명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존경하지 않거나 지킬 성의가 부족하다고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와수단까지도 가지고 있어야만 목사의 교훈에 힘과 권위가 있다."고 했다.

<sup>18)</sup> Calvin, Inst., IV.12.2.

<sup>19)</sup> 황대우, "개혁교회 당회의 기원 역사," 개혁주의 학술원(2007.5.11), https://www.kirs.kr/index.php?document\_srl=891

<sup>20)</sup> Calvin, Inst., IV.12.2.

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

칼빈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권징의 단계를 설명했다. 마 18:15-17절에 보면 권징의 단계가 1:1로 권고함-〉 2-3인을 데리고 권고하고 두세 증인으로 확증-〉 교회의 권징-〉 이방인과 세리 와 같이 여김(출교)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예수 님의 말씀이고, 칼빈은 이에 근거하여 권징의 단 계를 설명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 제9장 5조 당회의 직무에서 6항에 보면 권장하는 일이 나 온다.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 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 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 (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教)를 하며 회개하 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 ~15, 고전 11:27~30)."<sup>21)</sup>

본 장로회의 헌법 정치에 나오는 권징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칼빈의 권징 단계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sup>22)</sup>의 순으로 나온다. J.A. Hodge는 당회의 4권으로 "당회의 제4권은 권징을 관리하는 것이니 곧 권계, 견책, 수찬 정지와 출교하는 일

이다(고전 11:27-34; 살전 5:12-14; 살후 3:6, 14-15)."라고 했다.<sup>23)</sup>

#### (3) 권징의 목적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다루면서 두 가지만을 표지로 구분하고, 권징은 표지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은 분명히 믿음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을 주장했다. 이것이 세 번째 표지(권징)의 의도이다. 24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조직되어야한다. 그리고 교회가 권징도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교인을 배제하기위함이며 교인들이 그 교훈과 행위에 있어 다같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엄격히 순종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25)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3가지로 제시한다.26 첫째,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로 인해 욕을 먹으면 안된다. 그래서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또 거룩한 주님의 성찬을 죄인들로 인해 더럽혀서는 안된다. 칼빈은 "이 가장 신성한신비에 치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성찬 분뱅는 신중한 태도가 극히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의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27)

<sup>21)</sup> http://gapck.org/sub\_06/sub05\_10.asp

<sup>22)</sup> 서철원 박사는 "수찬정지 조치를 받고도 아무런 뉘우침이나 고침을 나타내지 않고 더욱 심한 범죄의 생활을 계속하면 그를 교회에서 내보낸다. 이것이 출교 (excommunicatio maior)이다."라고 했다. 「교의신학교회론」, 161.

<sup>23)</sup> J. A. Hodge, 「교회정치문답조례」, 박병진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4), 122

<sup>24)</sup> Michael Horton, The Christian Faith, 748.

<sup>25)</sup> H.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62.

<sup>26)</sup> Calvin, Inst., IV.12.5.

<sup>27)</sup> Calvin, Inst., IV.12.5.

둘째, 흔히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악한 일을 보면 그것에 끌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물이 들게 되는 것이다. 고전 5:6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한다. 적은 누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전 5:11)라고했다.

셋째, 비루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바 울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 는다면 그 사람을 지목해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 금 부끄럽게 하라고 했다(살후 3:14). 더 나아가 고전 5: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며 딤전 1: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 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 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 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탄은 교회 밖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의미는 교회 밖으로 즉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밖으로 내쫓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28)

#### 4. 출교: 교정수단

칼빈은 출교를 교정의 수단으로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마 18:18)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매는 일의 효력을 교회의 견책에 한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출교당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품행과 생활이 비난을 받는 것을 듣고 만일 회개하지않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29)

칼빈은 딤전 1:20절을 주해하면서 '사탄에게 내어 준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의 자리를 주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이므로 교회 밖에서는 사탄의 지배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회로부터 끊기는 사람은 그가 교회와 화해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 전에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횡포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30)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sup>28)</sup> Calvin, Inst., IV.12.5.

<sup>29)</sup> Calvin, Inst., IV.12.10.

<sup>30)</sup> Calvin, Commentary on Timothy, Titus, and Philemon, 430-431.

"교회는 회개치 않는 상습 범죄자에게 특별 권면과 교제로부터의 추방을 선언함으로 이 권징을 집행한다"고 했다.31) 바빙크가 말하는 교제로부터의 추방이 바로 출교를 뜻하는 것이다.

칼빈은 출교와 저주는 다른 것으로 이해했다. "저주는 모든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정죄하는 것이다. 출교는 그의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며 징계하는 것이다."32) 출교라는 것도 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장차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경고함으로 사람을 불러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칼빈은 "만약 죄인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화해와 교제의 회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주는 결코 쓰지 않다. 따라서 교회의 권징은 출교된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교회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들을 바른 생활로 돌이키고 교회에 돌아와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33)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살후 3:1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 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교회의 권징에서 이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권징에서 도살 행위로 타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 Ⅲ. 결론

칼빈은 교회의 권징에서 출교를 사탄에게 내

어주는 영적 의미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출교를 비롯한 교회의 권징은 사람을 죽이고 영원한 지 옥의 형벌을 내던지는 사형 언도가 아니라 출교 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줌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30장 3절에 보면 "교회의 책벌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으며, 다른 사람들을 막아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인호(印號)가 극악하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방임하여 두면 정당히 교회에 내릴 터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명시한다.34)

오늘날 교회는 칼빈의 이 권장에 대한 가르침, 출교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시행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권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죄인들에 대해서도 권장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언제나 바른 표지를 가지고 시행해 나가 야 한다. 그 표지는 첫째, 말씀의 참된 전파, 둘 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셋째, 권징의 신실한 시 행이다. 이 표지를 바르게 시행할 때 교회는 교 회다움, 교회의 원래 자리에 바로 서게 되는 것 이다.(\*)

<sup>31)</sup> Herman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527.

<sup>32)</sup> Calvin, Inst., IV.12.10.

<sup>33)</sup> Calvin, Inst., IV.12.10.

<sup>34)</sup> http://gapck.org/sub\_06/sub09\_30.asp

# 

임홍길 목사(군산진실교회)

#### 목차

- 1. 서론
- 2. 종교단체의 과세 법리
- 3. 종교인 소득 과세
- 4. 비영리 단체 고유번호(군산진실교회)
- 5. 결론

#### 1. 서론

교회 내부적인 신학적인 측면은 결국 집합체 로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와의 관계속에 서 균형을 갖고 강조되어야 한다. 무형교회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유형교회에서 보여진 실수나 조직적 특성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형태로 나타 난다. 그래서 분리주의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무형교회는 유형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반대로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균형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이 같은 이해가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가 된다.

교회에 대한 정의로써 교회 내부적인 신학적인 측면이 아닌 집합체적인 성격으로 인한 이해가 역시 필요하다.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이상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할 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법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즉 국가가 교회를 어떤 단체로 이해하고 어떠한 법령 속에서 교회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체법에서 사단(社團)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의사업을 하기 위하여 결합한 인적단체이며, 사단이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하면사단법인이 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된다.

비법인 사단로서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과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종교단체로서 교회의 과세 법리, 종교인 과세 등의 문제, 또한 교회의 고유번호와 비과세와의 관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 2. 종교단체의 과세 법리

첫째로, 교회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이다. 이 중에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제공한 사택이나 숙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경우 비과세이다.35)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인 교회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6. 12. 27).
-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 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취득한 토지 건물은 3년 내에 종교목적에 맞 게 사용해야 하고 3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건물 일부를 임대하거나 유치원, 학원, 카페 등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과세가 된다. 교회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가 면제 된다.

아울러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매입하여 3년 내에 건축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대법원의 판 례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 을 뜻한다. 특히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중 추적인 존재이므로 어떤 건물을 담임목사의 유 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 없음으로 비과세"라는 것 이다.36)

그러나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 강도사, 전도 사, 관리집사의 사택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대상 이 된다. 그 이유에 관해 법원은 "담임목사는 교 회에 필수적 존재이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는 아니므로 그들이 주거에 사용하 고 있는 사택도 교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7)

부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교회의 그 목적사 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다음과 같은 판례 법 리에 따라 과세 대상이다.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sup>35)</sup>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sup>36)</sup>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98 판결.

<sup>37)</sup>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호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호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2739호 판결.

신도수가 많아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8)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부하는 세금이 취득세이고, 취득 사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서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을 뿐이다(제50조 제3항).

따라서 부동산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록 교회라 하더라도 세금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구 지방세법은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지방세법 제127조),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종교사업을 위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이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지 않아 교회 부동산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 현재 재산을 실질상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회재산 중 특히 부동산에 대

하여만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 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교회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교회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종교단체가 제3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종교단체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부 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 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지 방세특례제한법 19조 2항, 시행령 8조의 3). 과 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종교단

<sup>38)</sup>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체의 대표자나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50% 경감되고, 기타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25%, 재산세 25%를 경감한다(지방세특 례제한법 20조).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 관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용 부동산은 취득세의 20%(특별시·광역시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그 밖의 지역은 취득세의 40%와 재산세의 50% 범위에서 지자체별 조례 로 정한 율을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 4항).

둘째는,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 는 조세이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발 생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 는 것이 원칙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설립되는 법인이다. 바로 교회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단체에 속한다.

다만 교회가 국세기본법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가운데 82번)로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개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가운데 89번)로 발급받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했더라도 양도소 득세가 과세 된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조항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2019. 12. 31. 제목개정)

-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 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 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 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8. 12. 31. 개정)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 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 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2. 27. 개정)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010. 1. 1. 개정)

-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 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2010. 1. 1. 개정)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
  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 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 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등)

- 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단체의 명칭
- 2. 주사무소의 소재지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4. 고유사업
- 5. 재산상황
-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 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내 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진다.
-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 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생략)
-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법 제92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
-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 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 호를 부여할 수 있다.
-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생략).
-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 정자산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 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생략)

셋째는, 증여세이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유형의 재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연관되어 상속세법에 의해 과세하였으며, 1997년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제정되면서 좀 더 명시적으로 법제화되었다.

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공익목적이란 종교, 학술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16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교회 등 공익법인에 출연(증여)한 재산의 사후 관리를 강 화하였다. 원칙적으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출연(증여)하는 경우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교인들이 거액의 부동산을 교회에 출연(증여)한 경우에도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교회등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람 및 증여한 사람의 친족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39)

2019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 3항이 개정되어 교회 등 공익법인이 출연(증여) 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및 '출연(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예를 들어, '교인이 교회에게 현금을 낸 후 이를 가지고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교인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교인이 부동산을 교회에게 증여한 후 교회가 사용하다가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교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에 이전에는 교회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즉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해서 증여세 과세가액 에 불산입 되는 것이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할 때 교인이 비교적 거

<sup>39)</su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액의 헌금을 교회에 낸 경우에 그 헌금이 교회에 귀속된 이후에도 그 사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증여) 하는 경우 증 여세 절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 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회가 교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직접 유 지재단에 편입등기한 경우 토지를 증여한 교인 이나 교회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외에 사 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 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 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 교회가 교인으로부 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았던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아 유지재단 에 편입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도 비과세 되는데 이때도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종교목적사 업에 사용해야 한다.

#### 3. 종교인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하게 된 다. 관련 소득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 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종교인의 소득 중 비과세 항목으로 활동비영역을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 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 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 부터 받는 금액으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금 액
-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 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 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가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③ 법 제

12조 제5호 아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3. 제12조 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종교인 활동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하였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2조(질문·조사) ② 제41조 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할 때 종교단체가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

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 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제222조(질문·조사)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요건이 모든 기간에 발생 한 소득에 대한 과세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된 2018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설정하여야 한 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18년 이전 퇴직소득에 대 한 과세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 칙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나. 이전까지 비과 세였던 관행으로 볼 때 종교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2020년 11월 현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소득(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종교인 퇴직 금 과세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회는 재정집행 에 대한 정확한 재정장부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또 다른 교회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비영리 단체 고유번호(군산진실교회)

군산진실교회는 2014년 군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군산진실교회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



는 단체'(비영리국내법인)로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군산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고 사 업자등록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다.

군산진실교회는 토지를 매입(2002년 11월, 2003년 6월)하여, 교회건물을 신축(2003년 11 월) 완공하였다. 그런데 2003년 9월 고유번호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즉 단체의 고 유번호(코드번호 82번)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대신 소득세법상의 고유번호인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코드번호 89번)를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토지 와 건물을 매각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군산진실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 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거주자로 여겨져 부동산 처분 에 관한 귀속 양도세를 결정 · 고지를 받았다. 이 에 군산진실교회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처 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조세심판40)를 청구하게 되었다.

40) 청구번호 2014광2993

이유는 쟁점 부동산을 2002년 11월 12일 취득하여 2011년 12월 27일 양도시점까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003년 9월 5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 (401-82-60380)를 폐업하

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401-89- 04034)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03년 9월경 각 교회에 서면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하라는 통지가 있어서 세법에 정통하지 않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교회의고유목적사업, 교회의 소속(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토지 및 건물 등을 본래의 선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으로보는 단체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군산진실교회는 2002년 11월 12일 부지구입 당시와 2003년 8월 14일 교회신축 당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결정 권한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당회나 공동의회를 통해 집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군산진실교회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로, 쟁점부동산이 2011년 12월 27일 양도일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주장하나, 양도일 현재 1거주자로 보는 고유번호

(401-89-04034 대한예수교장로회군산진실교 회, 대표자 임홍길)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단체로 등록되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대응하였다. 또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쟁점부동산을 2011년 12월 27일 지역주택조합에 14억 5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여 2014년 1월 10일 양도소득세 92,186,380원을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통보하였다.

군산진실교회는 이와같이 조세심판청구에서 교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하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41)을 제기 하였으나역시 패소하였다. 이유는 부동산의 처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42)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법리이고,

세무서가 발급한 코드번호(고유번호) '89'이면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로터 코드번호(고유번호) '82'번을 받을 경우, 법인으로 보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된다. 교회가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에게 부여된 코드번호(고유번호) 89번을 발급받을 경우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적용받게되어 교회의 은행예금 이자 수입에 대한 14%에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이 부과된다.

#### 5. 결론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는 학설과 법리, 판결 모두가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신도들의 개인에 게는 지분권이 없지만 사용하는 권한이 있는 공 동소유재산이다. 김제중앙교회 담임목사와 교인 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교단 탈퇴는 교회 탈퇴로 판단하여 종전 김제중앙교 회 재산의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기말소 소송에서 잔존 교인들에게 귀속되는 판결이었다.

교회 내부의 권징재판이 분쟁의 원인이 되어 법원에서 쟁송이 되기도 한다. 이때 법원은 종교 내부의 권징에 대한 사법심사 원칙을 정해 놓고 그같은 원칙에 의해 전국 법원의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권징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하여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나 그 권징

<sup>&#</sup>x27;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법리이다.

<sup>41)</sup> 전주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단 509 판결.

<sup>42)</sup> 법인으로 보는 단체, '82번'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①법인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신청서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③교회정관 ④소속증명서 ⑤대표자증명서 ⑥교회토지, 건축물관리대장(교회 명의 등기시) 또는 교회 임대차 계약서(교회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어있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됨) ⑦계좌개설 신고서(세금 환급시 입금 받을 통장)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일 경우에는 사법심 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 내부의 교리와 그 해석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는 사법심 사에서 배제한다.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과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회 회계장부, 장부열람문제,<sup>43)</sup> 교회 부동산의 명의신탁 문제<sup>44)</sup> 등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교회가 명의위탁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 자를 통해 명의 신탁할 때에 명의신탁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은 인정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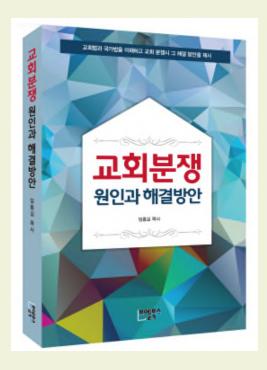
다.45)

엄격한 절차, 적법절차에 의한 교회운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엄격한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교회의 각종 법률행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그릇된이해로 교회가 더욱 분쟁으로 심화되는 경우가많다.

임홍길 목사

군산진실교회 담임

박사학위논문: 교회분쟁 원인과 해결방안



<sup>45)</sup>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실명법)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sup>43)</sup> 공동의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의 회계장부열람· 등사권을 인정하되 그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예산편성 및 결산 의결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②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열람· 등사청구의 이유가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을 것), ③ 열람· 등사청구 이유와 대상 장부등 서류와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④ 그에 따라 공정한 결산 및 감사절차를 통해 그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한 범위 내에서 회계 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sup>44)</sup>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할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 김순정 목사

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였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종교 자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 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 고 이어서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 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46)

영국의 국왕이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청교도 들을 박해하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 기 위해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다.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순례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미국을 세우고 헌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헌법에는 이 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도 그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종교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치와 교회(신앙)은 분리된다는 것이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사상이다. 그러나이것을 오해하여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오해를 하고있다.

성경과 개혁신학은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

https://law.go.kr/%EB%B2%95%EB%A0%B9/%EB% 8C%80%ED%95%9C%EB%AF%BC%EA%B5% AD%ED%97%8C%EB%B2%95/%EC%A0%9C20%EC% A1%B0

<sup>46)</sup> 

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으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두 기관은 상호보완적 입 장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 거나 간섭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또한 교회는 국가에 대 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복중한다(롬 13:1-3). 그러나 신앙에 위배된 행위를 강제하 거나 신앙을 해하는 경우는 항거하며, 국가가 정 의와 공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선지자적 충고를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는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는 정책을 폈다.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는 듣지 않았다. 이에 교회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다. 특히 서울지역 소속의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고 승소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서울 염광교화를 비롯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2주동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

계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 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 하여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인 교회에 집합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 단체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있는 데, 인터넷이나 TV방송 등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 적으로 아무런 예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서 "이는 종교 행사의 전면적 금지를 명하는 것 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부는 이어 "종교 시설의 경우에도 결혼·장례식 등과 같이 참석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편의 주의로 이해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코로나 유행시에도 행정 명령을 내 리지 않았다. 교회와 같이 철저히 방역을 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았다. 유독 종교시설만 엄 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성경과 개혁신학이 제시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만약 질병의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면 교회들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국가와 교회는 각자의 영역이었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분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의. 설교 주의 경보

### 법원1심, 강의 '성희롱 인정'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를 정년퇴임한 이상원 교수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 대학교'(이사장 김기철 목사)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무효확인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재판부는 지난 11월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 판사)는 이상원 교수의 2019년도 2학기 "인간론 과 종말론" 강의 중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였 다.

그러나 이상원 교수는 "자신의 언행은 교수 방법의 일환이었을 뿐, 학생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비위행위가 아니고, 설령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처분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2020. 11. 27)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는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86071 판결)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했다.

① 원고[이상원 교수]가 이 사건 수업에서 기독교 성윤리를 강의하면서 인간의 성기, 성행위

등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발언의 내용, 맥락,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원고가 당시 남성의 성기와 남성 간 성관계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급한 데에 이어 연달아 여성의 성기와 이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노골적인 묘사를 동반하면서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다'고 발언하는 등 수강 중인 학생들을 직접적인예시 대상으로 삼아 여성을 대상화·수단화하는수사를 동반하였다.

- ② 원고는 매 수업시간마다 성적인 예시를 들어왔는데 수업 개요나 수업 목적에 비추어 그러한 예시가 매번 필요한지 의문인데다가 그동안수업 중 반복되어 온 성적인 예시의 언급은 위와같은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하여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단초로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 ③ 원고의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수강 중인 학생들이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다.
- ④ 원고는 대학교수로 이 사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지위에 있음에도 부적절한 성적 수사를 동반한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윤리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⑤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는 수업현장에서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이상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또한 이상원 교수는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는 자신에게 정직기간[1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7,81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청구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은 종교단체인 신학 교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인한 동성애 반대와 관 련한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직 대학교 교수 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공교롭게도 총신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에 게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의롱 강의가 문제있다며 정직 1개월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이제 신학대학교나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에서 성희롱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는 총회 설립 110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 법'이 공포되어 시행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제107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연구 위원 15인을 조직했다 (위원장 임재호 목사, 서기 신현철 목사).

제104회 총회(2019)는 "오, 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은 5인 검토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 고 결의했다(제104회 총회 결의).

총회 결의는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이었다. 이 결의는 결국 '개정' 청원이었다.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면 "오,낙자 등 오류"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낙자와 오류 개정 청원은 정치편, 권징조례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교리적인 부분인 12 신조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반드시 연구위원 15인을 두어 개정 절차를 따라야 했었다. 그런데 개정 절차가 아닌 단순 5인 연구 위원을 두었을 뿐이다.

이 결의로 제105회 총회(2020)는 "헌법오낙 자검토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종일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 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06~607 쪽)대로 받되, 오낙자로 보고한 내용(보고서 608~667쪽)에 대하여는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 기로 하고 서기단에 맡겨 검토 후 처리하기로 가 결하다."라고 결의했다.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검토연구위원회일뿐이었다. 오낙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가운데 자구 수정을 오,낙자로 판단하여 많은 분량의 자구 수정과 원형을 변경하는 개정까지 하고 말았다.

제105회 총회는 보고 내용 가운데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기로 하고 서기단에게 맡겨 검토 후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서 "단순 오낙자"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검토 후처리"의 모호성으로 모두 중단되고 말았다. '오낙자'는 '오탈자'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검토 후 처리"가 헌법을 수정하여 다시 출판



하는 문제라면 더더욱 문제가 됐다. 이 일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제107회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라 15인 연구 위원을 조직했다. 총회결의는 정치와 권징조례편 만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순히 오,낙자만이 아닌 미흡한 부분까지 범위를 확대해 결의했다.

그동안 헌법의 '오탈자' 문제를 언급했지만, 무엇이 오탈자에 해당한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모호했다. 종전 헌법을 후 헌법으로 개정한 것은 후 헌법이 확정된 헌법이다. 그런데 종전 헌법의 '자구'를 기준으로 현 헌법이 오류이며, 오낙자, 오탈자라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헌법의 오낙자란 제103회 총회(1018)에서 헌법개정을 공포한 후 그 공포된 내용대로 인쇄하지 않고 인쇄 과정에서 오낙자가 있으면이는 헌법개정 사항이 아닌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공포된 내용을 근거로 헌법 책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된 헌법의 자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오낙자, 오탈자로 판단하여 이를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 책을 수정하여 다시 출판해야 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헌법 시행 100주년을 맞이한 이번 헌법 개정 위원회는 헌법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는 일이다.

현재 헌법의 특정 규정이 모호하여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규정들이 있다. 이를 자구 수정으로 본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부분 개정은 전체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부분 개정은 전체 내용과 충돌이 발생되거나 서로 모호한 헌법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헌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내용을 달리 적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총회 헌법을 총회 유권해석으로 운영해야만 했다. 그동안의 총회 유권해석의 정신을 헌법개정에 반영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헌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규정의 불비로 법원에서 총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며 총회 관행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문제 역시 일정한자구 수정만으로 명확히 할 수 있다.

대회 제는 헌법개정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현 헌법이 기존의 헌법에 대회제를 삽입하는 형태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현 대회제가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회 총대 파송은 대회가 아닌 노회가 하게 돼 있다. 대회 제가 시행되면 총회 총대는 대회가 파송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회가 총회 총대 파송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총회 총대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의 헌법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현행 헌법이 대회는 '임시회가 없다'라는 내용과 '임시회가 가능하다'로 충돌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역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헌법에 여성사역자에 대한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단의 직제에 근거하여 어떻게 효율적인 교단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를 토대로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신도게요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에 대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헌법 부록으로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헌법의 교리 편에 둘 것인지를 논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총회 헌법', '교회 헌법'으로 달리 규정된 내용을 통일성 있 는 용어로 정리해야 한다.

헌법 개정위원회는 총회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108회 총회에 내놓아야 한다. 무리하게 헌법을 개정하거나 총회 내 정서에 반한 개정을 하면 안 된다. 너무나 의욕이 과하면 개정 자

체가 불발될 수 있다. 지교회가 다시는 헌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분쟁이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리폼드뉴스〉

### 지교회 교인 지위 박탈인 '제명(출교)' 과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 의 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서 교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입회하고 퇴회하는 권한은 치리회인 당회에 있다. 교인의 이명과 제명에 해당된 삭제도 당회의 권징조례로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교단 헌법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교인 지위 박탈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교인 지위 박탈은 곧 교회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박탈로 보기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한다.

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는 두 종류로 적용한다. 단순히 지교회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의 제명이 있고 사단에게 맡기며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출교의 경우가 있다. 문제는 제명도출교라고 한다. '제명출교'로 시벌할 경우 단순



히 지교회 회원으로서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제한한 '제명'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인지 모호하다.

당회가 특별한 경우,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할때 화원 명부에서 삭제한다. 그리고 이명 간 교인 역시 절차에 따라 삭제한다. 이러한 삭제는 제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삭제는 당회의 권징조례 규정안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또한 교인의 비위가 있는 자에게 시벌로서 제명에 처한경우가 있다. 한결같이 이러한 제명은 '출교' 개념이다. 즉 교인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권징재판으로 회개가 없는 경우, 사탄에게 맡기는 출교가 있는데 이 역시 교인 지위를 박탈을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본 교단 헌법에 '제명, 출교'라고 했다. 이러한 논의는 2018년 헌법 개정 공포 시 개정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이다. 단순히 지교회 제명처분을 할 때는다른 교회에 세례교인으로 등록(가입)할 수 있다.이를 교회 교인에 되지 못하게 내보낸다는 의미의 출교로도 이해한다. 치리회 시벌에서 사단에

게 맡긴다는 의미의 출교는 다른 교회 세례교인 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 는다는 고백을 통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회나 노회에서 제명에 해당한 교인 지위 박탈을 위해 '제명출교'로 처분할 수 있고, 단지 제명출교가 아닌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로 처분할 것인지는 정확히 해야 한다. 본 교단 헌법은 그래서 '제명, 출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제명과 출교 개념을 정확히 하여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열거된 문장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본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오해한 총회 재판국도 "제명출교" 처분에 대해 "어떻게 사단에게 맡기는 출교처분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불법판결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당회나 노회 재판국이 판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이 개념을 분명히 하여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판결문 해석을 놓고 또 소송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리폼드뉴스〉

### 교회법은 교회를 위하여 연구소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는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5년 동안 많은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고 상담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회의 적법한 절차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요건입니다. 교회의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인지,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한 각종 법령과 사 례들을 연구연구소 학술지를 통 해 발표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학술지〈교회법〉을 합본으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막연한 교회 운영의 절차를 정확한 법리에 의한 확신 은 분쟁없는 화합과 은혜로운 교 회 운영으로 모두를 하나되게 합 니다.

저희 연구소를 위하여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교회 와 여러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분 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날까 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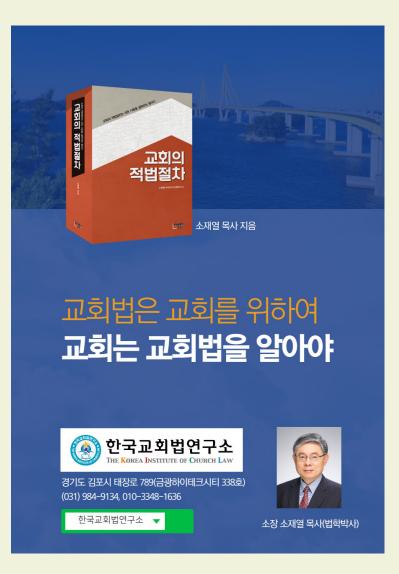
그동안 저희 한국교회법연구소 를 지원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 립니다. 성원에 힘입어 계속적인 연구와 연구논 문들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계속하 여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단체 등록(119-82-83446)

계좌 :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 외 직원 일동



## 국제교육하는 기숙형 인가 대안학교 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모집

이 보다 더 좋은 국제학교는 없다!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원어민에 의해 미국 교과서로!

> 2023학년도 신입생 및 전·편입생 모집

■ 모집대상 : 초등 1~6학년 중·고등 1~3학년

### 진 학 설 명 회

2022년 11월 12일(토)

- 오전 11:00: 꽃동산 교회(상계성전)
- 오후 3:00: 일산 킨텍스(2전시실 303호)

원어민 교사







































SHEMA GLOBAL SCHOOL 쉐마 글로벌 초·중·고등학교

입학 및 상담문의 031-858-3144 http://www.ishema.kr



<sup>꽃동산교회 부설</sup> **꽃동산 실버 요양원**  문의전화: T. 031-865-0675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80번길 184-52 홈페이지: www.flowergardensv.com

꽃동산 실버요양원에서 기독교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목사, 전도사 특별 우대)

#### [목회자 필독]

###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교회 현실은 너무나 어렵다. 그 어려움은 일제 강점기와  $6 \cdot 25$ 와 같 은 어려움과 환난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한 감염병으로 인한 환난이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교회에 교인이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인이 모이지 못하면 자동으로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 운영에 치명상이다. 이런 이유로 명분상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을 말하지만, 이역시 한계로 보인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고 있다. 또한 예배에 참석 인원을 제한한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

#### ○ 의결권자 확정 문제

이제 교회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교회 교인 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 언제 까지 출석하지 아니할 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 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교회 의결권자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회 재산처분과 교단 탈퇴, 정관변경에 대한 문제를 의결할 때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결의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 재산처분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를 운영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재산을 처분해야 할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그 적법성에 대 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다.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르면 된다. 재산처분이 당회에 위임되었을 때 당회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산을 처분한 후 반드시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근거를 남기고 나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 권한은 당회에 위임하였을지라도 처분후 재정에 대한 집행 권한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한다. 특별한 집행이 필요할 경우,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예산편성 외에의 특별한 경우 집행 권한까지 당회에 위임된 경우가 있다.

이런 정관을 가진 교회는 당회가 집행해도 문제 가 되지 않는다.

#### ○ 재정집행

담임목사가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 재정위원장 (혹은 부장)과 의논하여 집행할 때 반드시 집행 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 이 전년도 공동의회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항목 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만 집행하여야 한다. 편성된 예산 항목이 없는 부분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교회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예산, 항목 간 변경, 목적헌금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당회를 통해 임시 공 동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녹 록지 아니할 때 차기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재정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의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정 사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 재정집행 승인 결의 때 이를 문제로 삼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 ○ 각종 결의의 적법절차

교회 분쟁 중에 교회의 각종 주요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등에서 결의할 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이 문제가되는 경우가 많다.

담임목사가 이러한 회의 원칙을 잘 몰라 불법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회의 전에 반드 시 무엇이 회의 절차인지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참고, 소재열 목사, 〈교회 표준회의법〉참조)

특히 당회 결의 때 모두가 합의하면 그만이지 만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결로 표결할 경우, 적 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에 하자일 경우, 무효 사유가 되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 담임목사는 소통해야!

담임목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여도 당회에서 의논한 후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처리가 위법일 경우, 담임목사 혼자 책임이아니다. 그 문제를 지적할 당회원은 없을 것이다.

교회 분쟁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당회원은 담임목사가 처리한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의논하지 않고 장로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더 큰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교 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담임목사의 불통과 고집은 결국 교 회가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 교회는 집합체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 단체의 소유이다. 단체의 운영방식을 따라야 한다. 교회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재정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명제법이 적용되고 있다.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담임목사 개인 통장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 재정을 담임목사나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담임목사나 장로의 개인 재정을 교회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이는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재정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집행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재정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부 교회나 기관에서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각종 지원비를 제공해 주었을 때 담임목사 개인 을 위한 지원인가, 아니면 교회에 지원하는 지원 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집행해야 한 다.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실소유 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회 마다 사업자번호를 발급했다. 이때 개인 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 담임목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

담임목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심지어 은퇴할 때 받은 각종 격려금, 위로금, 사택 제공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증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아무리 격려금이나 위로금, 선 교비로 지급받았을지라도 종교인의 기타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 되다.

#### ○ 결론

담임목사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혹은 누구도 담임목사의 행정에 반대한 교인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담임목사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목회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상상의 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나중에 법의 원칙을 적용할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틈을 타 교회 재산을 매각해 버리는 등의 일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담임목사의 적법절차에 따른 목회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조, 소재열 지음〈교회의 적법절차〉참조)



#### 그동안 14년 동인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리와 현장 사례를 연구히여 제공합니다. 또한 교회 분쟁시 교회법 연구를 용역받아 봉사합니다.

####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 분쟁 예방을 위한 교회 정관 정비
- ✓ 교회 운영의 적법절차 자료 제공
- 교회 분쟁시 교회법 연구 용역
  - 🖊 교회법 코칭 및 세미나, 강의, 집회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338호) 010-3348-1636